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1. 7. 13.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2011년 6월 21일
-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1년 6월 22일
- 라. 상정일자 : 제161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 7. 4)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정희 )

####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제출 권리 보장(안 제5조)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공고(안 제6조)
-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 운영(안 제10조부터 안 제20조까지)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재정 및 실무지원(안 제2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이 2011. 3. 8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일인 2011. 9. 9일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

- 의하고 구청장 책무와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 제출 권리를 보장 함.
- 제2장 안 제6조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제출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 제3장 안 제10조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 각 동별 1명씩 동장이 추천한 사람 등을 포함한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5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까지에 회의개최, 회의록 공개,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4장 안 제21조에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위원회 활동비,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 조례안은 플뿌리 자치의 핵심인 주민참여를 예산편성 과정에 도입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적인 법적·제도적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의 실효성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임.
  - 또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주민스스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양한 주민의 수요에 실시간으로 부응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임.
  - 그 동안 구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시책으로 2004년부터 구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주민 참여방”을 연중 운영하고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반영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공모를 실시하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참여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으로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많은 주민들이 본 조례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각계각층의 대표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고 이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는 본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이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제 59 호 |
|----------|--------|

제출연월일 : 2011.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 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 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 가. 제1조(제정의 목적)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
- 나. 제6조(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공고)  
예산편성방향 및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절차 등을 포함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함
- 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30인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 라. 제11조(위원회 기능)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
- 마.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은 재직기간, 위촉직은 2년의 임기(단, 1회에 한해 연임가능)
- 바. 제14조(위원회 운영원칙)
- 사. 제15조(분과위원회 구성)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 구성이 가능함
- 아.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위원회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예산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1.4.21 ~ 5.11) 결과 : 별첨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붙임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요약서 1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동별 1명씩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 ⑤ 구청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촉직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5.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6개 이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의 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장 지원 등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요약서

| 의견제출자                    | 제 출 의 건                                                            | 검 토 결 과 |                                                                                                                  |
|--------------------------|--------------------------------------------------------------------|---------|------------------------------------------------------------------------------------------------------------------|
| 진보신당<br>영등포<br>당원<br>협의회 | 1. 주민참여예산제 기본이념 명시                                                 | 미반영     | 조례안 제1조에서 제도의 근본취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                          |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                                | 미반영     | 조례안 제10조 6항 및 제21조에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                          | 3. 예산정책토론회 개최의 의무 실시                                               | 검 토     |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시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검토예정                                                                       |
|                          | 4. 위원회 인원 수 100명으로 확대                                              | 미반영     | 1) 방대한 위원회 운영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 예산지원이 구 실정상 곤란<br>2) 신속한 의견집약이 어려워 예산편성 일정에 차질 우려                                     |
|                          | 5. 사회적약자에 대한 명확한 대상 규정 및 위원회 참여 보장을 의무화                            | 미반영     | 조례안 제10조 5항에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 있음                                                                           |
|                          | 6. 위원의 선정기준과 추천 기간 공개 및 민관협력 방식의 심사기준마련                            | 미반영     | 조례안 제10조 4항에 따라 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추천 및 전문적 지식을 가진 주민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음                                          |
|                          | 7. 위원의 임기 만료 시 신규인원30%확보                                           | 미반영     | 위원회의 권력화 방지 및 주민참여 폭 확대를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을 조례안 제1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                          | 8. 위원회의 기능 수정<br>1)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조정기능<br>2) 주민참여예산운영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미반영     | 1) 심의·조정 기능은 구의회 고유권한으로 상호 기능 충돌 우려<br>2) 평가 및 개선방안은 추후 제도가 시행되면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                                    |
|                          | 9.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설치                                              | 미반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과 차별화되지 않는 기능을 가진 운영위원회의 중복 설치는 비효율적                                                                |
|                          | 10.심의안건을 회의 7일전 까지 위원회에 사전 제출                                      | 미반영     | 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 11.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설치                                                   | 미반영     | 1) 위원회 지역대표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br>2) 기존 지역회의, 설문조사, 구홈페이지상의 예산참여방, 서면제출 등으로 상시 의견제출 가능하며 별도의 지역회의 개최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절감 |
|                          | 12.예산학교 운영                                                         | 검 토     |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시 예산학교 및 설명회 개최 검토 예정                                                                   |
|                          | 13.조례시행시기를 '공포와 동시 시행'으로 수정                                        | 반 영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이 오는 9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시기를 공포와 동시에 시행으로 수정 검토                                          |

| 의견제출자                    | 제 출 의 건                                  | 검 토 결 과 |                                                                                                                            |
|--------------------------|------------------------------------------|---------|----------------------------------------------------------------------------------------------------------------------------|
| 조진형<br>(신길5동<br>430-15)  | 14.조례안 제10조 4항에<br>대한 보완필요               | 미반영     | 1) 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1명씩<br>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며,<br>2) 전문적 지식이 있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br>규정을 두고 있음                                   |
| 민주<br>노동당<br>영등포구<br>위원회 | 15.주민참여예산제 기본이념<br>명시                    | 미반영     | 조례안 제1조에서 제도의 근본취지에 대하여<br>규정하고 있음                                                                                         |
|                          | 16.주민의 범위에 '비영리<br>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br>을 추가 | 미반영     | 조례안 제2조 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해 비영<br>리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을 포함하고 있음                                                                      |
|                          | 17.결과 반영 및 공개                            | 미반영     | 조례안 제9조 및 17조에 의거 주민의견 수렴결<br>과 및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 18.위원회 인원 수를100명~<br>300명으로 확대           | 미반영     | 1) 방대한 위원회 운영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br>예산지원이 구 실정상 곤란<br>2) 신속한 의견집약이 어려워 예산편성 일정에<br>차질 우려                                         |
|                          | 19.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br>설치                      | 미반영     | 1) 위원회 지역대표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br>2) 기존 지역회의, 설문조사, 구홈페이지상의<br>예산참여방, 서면제출 등으로 상시 의견제출<br>가능하며 별도의 지역회의 개최로 인한 행정<br>력 및 예산 절감 |
|                          | 20.예산학교,주민참여예산<br>토론회 개최                 | 검 토     |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br>수립시 예산학교 및 설명회 등 개최 검토 예정                                                                        |